

##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예고문

회원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1. 25.

대한체육회장

##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

### 1. 제정 이유

- 지방체육회장 회장 선거제도 개선 및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재선거 관련 법원 판결에 따른 규정 정비
- 규정 내 일부 조항 중 주체단체(대한체육회·시도체육회) 정정

### 2. 주요내용

- 【제11조 제4항, 제5, 6항(신설)】 기존 대의원이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부회장 등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및 자격 보유 기간 등 관련 조항 변경·신설 ※ 법원판결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
- 【제24조 제2항】 제11조 제4항 개정에 따라 회장 선거인의 구성에도 ‘시도체육회 정회원 단체의 장’으로 명시된 문구를 ‘대의원’으로 변경 ※ 법원판결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
- 【제24조 제4항】 조항 내에 주체단체(대한체육회·시도체육회)가 실질과 상이하여 정정
- 【제24조 제6항, 제7항】 ◦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 확보를 위하여 출마 의사표명서 제출 등 관련 기한 연장(+5일) ◦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예정에 따른 보궐 선거 근거 조항 신설 ◦ 제29조 제7항, 제10항 개정에서 사용할 “보궐선거등1)” 약어의 정의를 선행하여 신설

1)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(약칭: 위탁선거법)」의 보궐선거 관련 명칭 사용

- 【제30조 제1항】 시도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임원의 결격사유 반영
- 【제38조 제3항】 , 【제50조의2 제3항】 는 조항 내에 주체단체(대한체육회·시도체육회)가 실질과 상이하여 이를 정정

### 3. 의견제출

- 이 회원시도체육회 규정의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
- 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#### 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#### 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붙임 1.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부. 끝.